

의안번호	2202069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4. 8. 20.
추계번호	24B224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0억 3,900만원(연평균 4억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실태조사 (안 제6조)	367	367	367	367	367	1,835	367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설치(안 제8조)	41	41	41	41	41	204	41
합계	408	408	408	408	408	2,039	408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자급률의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 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련한 목재산업종사자, 해당 목재이용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목구조건축사, 목구조기술사, 목조주택 건축업자 및 목재가공 인력 등 목조건축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목재산업진흥지구·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전용단지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6. 목조건축용 목재가공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7.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 제6조(실패조사)	<u>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목조건축 및 그와 관련한 목재이용촉진 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목재산업진흥지구·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전용단지의 현황, 공공목조건축물의 목재이용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 및 목재이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패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u> <u>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u>	재량규정
4	안 제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u>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및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목재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목재이용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u>	의무규정
5	안 제8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산림청장 소속으로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u>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5항)</u>	의무·재량 규정
6	안 제12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의 관리)	<u>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가 제9조에 따른 시설, 인력기준 및 인정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u> <u>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u>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기관에 위탁</u> 할 수 있음. 이 경우 <u>평가,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수 있음(제3항)	
7	안 제13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에 활용되는 <u>공학목재 생산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u>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14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품질인증제도를 실시</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5조(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지원 등)	산림청장은 제9조에 따른 <u>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인정,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 등록업자 및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u>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과 목조건축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지원</u>을 할 수 있음(제2항) 1.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을 하는 자의 생산,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와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 관련 공익사업의 수행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공공건축물의 목조화와 공공기관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u>을 할 수 있음(제3항)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u>공공시설물에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화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등에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음(제4항)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u>공공시설물에 미이용목재를 이용하여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연구개발 및 기술 등에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산림청장은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자의 <u>해외교역 확대</u>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지원</u>을 할 수 있음 1.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자의 목재제품 관련 해외 시장 개척 2. 외국산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9조(목조 건축전문가의 활용)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용단지를 조성·운영하여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목조건축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u> (제1항)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목조건축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u> (제2항)	의무·재량 규정
12	안 제20조(목재 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u>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와 지역간별 재 이용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23조(국산 목재산업특화단지 조성 원칙)	<u>산림청장은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재이용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4조(목조 건축전용단지의 조성 원칙)	<u>산림청장은 특정 지역 내에 건축물의 목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목조건축전용단지(이하 “전용단지”라 함)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25조(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u>전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음</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31조에 따른 목조건축진흥센터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재량규정
16	안 제26조(전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u>전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전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17	안 제2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u>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및 제24조에 따른 조성 원칙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u> (제1항) <u>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u> (제3항)	의무규정
18	안 제31조(목조 건축진흥센터의 설립 등)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운영 등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u>목조건축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함)를 설립함</u> (제1항)	의무규정
19	안 제35조(업무)	<u>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u> 1. 국가가 조성한 전용단지의 운영 2. 목재이용촉진 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센터가 조성한 공공목조건축물의 관리, 임대 및 매각.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6.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등록증의 발급·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전용단지의 타당성조사 8. 목재이용촉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목조건축 및 도시목질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10. 목조건축, 목재이용촉진 및 도시목질화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목조건축, 목재이용촉진 및 도시목질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안 제36조(목재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u>진흥센터는 진흥센터가 운영하는 공공목조건축시설에서 목재이용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목조건축·목재이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u>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u>	재량·의무규정
21	안 제37조(진흥센터의 운영비)	<u>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함</u> 1. <u>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u> 2. 진흥센터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1)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u> 6.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④ ~ ⑥ (생략)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 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 기본계획은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6	안 제12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업 등록의 관리)		• 미대상 － 현행 사업 예산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실내 나눔숲 조성사업 * 1개소당 최대 2억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목재를 활용하여 바닥, 벽체, 천장 환경개선	5,400	5,400	5,4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산림청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참고														
5	안 제8조(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의 설치)	○															
4	안 제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목재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구축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림청은 현재 목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구축비 94.2억 (3년간) – 유지보수비 4.4억원(24년) <목재정보서비스 구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 (내내역사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목재이용증진 (1535-304)</td><td>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정보서비스 구축)</td><td>3,418</td><td>3,690</td><td>2,312</td></tr></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2	2023	2024	목재이용증진 (1535-304)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정보서비스 구축)	3,418	3,690	2,312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2	2023	2024													
목재이용증진 (1535-304)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정보서비스 구축)	3,418	3,690	2,312													
7	안 제13조(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및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공공건축물 목조화 및 목재이용 촉진 사업,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조성 및 목조건축전용단지 조성 등에 대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 및 지원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림청은 현재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목재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목재산업단지 구축,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공공시설물 목재이용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9	안 제15조(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 사업의 지원 등)																
11	안 제19조(목조건축 전문가의 활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2	안 제20조(목재산업 진흥지구의 지정 등)		<유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내용</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목재산업시설 현대화</td><td>960</td><td>960</td><td>480</td></tr><tr><td>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 시공비)</td><td>1,000</td><td>6,700</td><td>11,550</td></tr><tr><td>목재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물의 목재화, 목조건 축물 조성 일부 지원)</td><td>1,285</td><td>4,750</td><td>6,875</td></tr><tr><td>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국산목재 이용 건축물 내·외장 재 시공 지원)</td><td>1,000</td><td>1,000</td><td>1,000</td></tr><tr><td>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재산업계 대상 시설 지원, 지 역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업하여 연구개발 지원 등)</td><td>1,500</td><td>1,000</td><td>1,000</td></tr></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사업내용	2022	2023	202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960	960	480	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 시공비)	1,000	6,700	11,550	목재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물의 목재화, 목조건 축물 조성 일부 지원)	1,285	4,750	6,875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국산목재 이용 건축물 내·외장 재 시공 지원)	1,000	1,000	1,000	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재산업계 대상 시설 지원, 지 역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업하여 연구개발 지원 등)	1,500	1,000	1,000
사업내용	2022			2023	202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960			960	480																						
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 시공비)	1,000			6,700	11,550																						
목재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물의 목재화, 목조건 축물 조성 일부 지원)	1,285			4,750	6,875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국산목재 이용 건축물 내·외장 재 시공 지원)	1,000			1,000	1,000																						
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재산업계 대상 시설 지원, 지 역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업하여 연구개발 지원 등)	1,500			1,000	1,000																						
13	안 제23조(국산목재 산업특화단지의 조 성 원칙)																										
14	안 제24조(목조건축 전용단지의 조성 원 칙)																										
15	안 제25조(전용단지 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16	안 제26조(전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7	안 제27조(조성계획 의 타당성조사)																										
18	안 제31조(목조건축 진흥센터의 설립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에 따르면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금·보조금 등 지원, 업무위탁 및 용역 수행 경비 지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진흥센터 설립 규모 및 업무수행 범위에 따른 지원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9	안 제35조(업무)																										
21	안 제37조(진흥센터 의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실태조사(안 제6조)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유사사례인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이용실태조사’²⁾를 매년 실시중 (2008년 이후)

[표 2]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이용실태조사 예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목재이용실태조사	123	193	193	239	367	367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목조건축 및 그와 관련한 목재이용촉진 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 목재산업진흥지구·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전용단지의 현황
 - 공공목조건축물의 목재이용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 및 목재이용 실태 등
- 따라서 현행 ‘목재이용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개정안에 따른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비용은 2024년도 목재이용실태조사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이때, 실태조사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삭제 <2024. 7. 23.>
3. 삭제 <2024. 7. 23.>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계 결과,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8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비용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비용	367	367	367	367	367	1,83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전체 위원회))** 개정안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 수는 22명으로 가정
 - **(분과위원회)** 산림청 내 유사위원회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10명 이내의 3개 분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내 목재이용 활성화분과, 목재산업 경쟁력분과, 목재교육분과 등 3개 분과 운영중
 - － 3개 분과위원회 내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 수는 각 7명으로 가정 (전체 민간위원 22명을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눔)
 - **(전문위원)** 산림청 내 유사위원회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근 전문위원 5명을 두되, 이 중 민간전문위원 수는 3명으로 가정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내 전문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 2명, 민간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
 - － 분과위원회 개최시 전문가 3명에게 안전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지급중

[표 4]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구성 인원	인원	비고
위원장	산림청 차장	1	
위원	산림청 목재산업 담당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	공무원 (8)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6	
	건축, 도시계획, 실내주거환경 관련 전문가(국가건축정책위원장 추천)	1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2	민간위원 (22)
	목재공학·목조건축 및 바이오매스, 도시목질화 분야의 전문가(산림청장 위촉)	6	
	목재이용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2	
	민간단체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2	
합계		30	

자료: 제정안 제8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 등은 산림청 소관 다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현황 및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 (연간 회의개최 횟수)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유사위원회³⁾의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현황을 참고하여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산림청 소관 유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단위: 회)

위원회	연간 회의개최 횟수 (본회의 기준)			
	2021	2022	2023	평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2	3	2	2.3
산림복지심의위원회	4	3	4	3.7
녹색자금운용심의회	3	5	3	3.7
평균	3.0	3.7	3.0	3.2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2024년 6월 기준

3) 참고로 산림청 내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2021~2023년) 및 2024년 6월 말 기준,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만 개최함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2024년 6월 기준)

- (분과위원회) 목재이용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을 참고하여 1개 분과위원회당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⁴⁾
 -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전문위원 안전검토수당) 전문위원 안전검토수당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분과위원회 개최시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위원회 (전체 위원회)	민간위원 수(명)	22	22	22	22	22	—
	회의 개최횟수(회)	4	4	4	4	4	—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A, 백만원)	26	26	26	26	26	132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수(명)	7	7	7	7	7	—
	분과위원회 수(개)	3	3	3	3	3	—
	회의 개최횟수(회)	2	2	2	2	2	—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B, 백만원)	13	13	13	13	13	63
전문위원	민간전문위원 수(명)	3	3	3	3	3	—
	분과위원회 수(개)	3	3	3	3	3	—
	회의 개최횟수(회)	2	2	2	2	2	—
	안전검토수당 단가 (만원/명·회)	10	10	10	10	10	—
	소계(C, 백만원)	2	2	2	2	2	9
합계(D=A+B+C, 백만원)		41	41	41	41	41	204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목재이용촉진위원회 내 3개 분과위원회는 2021년 6회, 2022년 2회, 2023년 6회 등 연평균 4.6회 개최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